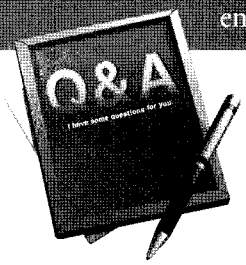

환경관리 질의응답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 · 문의 · 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검사 주기

Q 인천에서 주유소를 관리하는 자로써 토양오염 검사주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저희 주유소는 최초 위험물 설치 허가 등록일이 2005년 12월 7일이고 2006년 10월 매매로 인하여 토양오염 수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3년 5년 주기의 첫번 3년째 되는 날의 토양오염 검사를 면제받아 5년후인 2010년 12월 7일이 토양오염 검사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2006년 10월에 받은 수시 검사는 인정되지 않고 2008년 12월 7일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A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 · 임대 등으로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2006. 10월에 수시검사를 받았으므로 종전의 3년이 되는 해(2008년)에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며, 다음 검사는 개정(2009. 6. 25)된 검사주기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인 2010. 12월부터 6개월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및 종류

Q 별표7)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및 종류에 관련한 질의를 드립니다. 1~3종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하며, 발생폐수를 처리후 전부 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방류하는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비고1에 의하여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변경신고 해당 문의

Q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 사유 해당유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A업체 : 신고처리량 – 72톤, 실제처리량 – 0톤(처리방법 – 일반소각)

B업체 : 신고처리량 – 120톤, 실제처리량 – 100톤(처리방법 – 중간처리[압축])

C업체 : 신고처리량 – 180톤, 실제처리량 – 350톤(처리방법 – 재활용[파쇄,분쇄])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년간 처리량 372톤(A,B,C업체합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년간 약 처리량 450톤/년임

질의

상기와 같이 전체 총 처리량은 신고량보다 1.5배 미만 증가 되었으나, C업체의 실제처리량이 신고량보다 1.5배 이상 증가된 경우 C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요?

A 한 종류의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한 후 동 폐기물을 신고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그 처리 비율만 변경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의 폐아스콘에 대한 질의

Q 저희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입니다. 공사중에 도로의 폐아스콘을 파쇄하는 작업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법령에 보면 시행규칙[별표1의2] "사. 입도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바로 현장근처 재생아스콘업체로 납품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저희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납품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장근처 재생아스콘업체로 납품이 가능하다면 건설폐기물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삭된 폐아스콘은 파쇄,분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문구가 법령에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 가) 재위탁 해당여부는 건설폐기물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계약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바, 당초 배출자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계약한 업체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배출자와 계약되지 않은 다른 업체로 위탁한 경우라면 재위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폐아스콘을 수탁 받은 중간처리업체가 폐아스콘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생아스콘생산업체로 위탁하는 경우에도 재위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생아스콘생산업체는 배출자와 절삭 폐아스콘의 처리계약을 직접 하여야 됩니다.

나)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폐아스콘(입도 40mm이하로 절삭된 폐아스콘 포함)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2 사목의 규정에 따라 입도 40mm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콘은 파쇄·분쇄 처리절차없이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질관련 기술인력 중복선임

Q 수질방지시설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업의 면허를 동시에 등록하려고 할때 기술인력의 자격증 중복선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한사람이 2개의 자격증을 소지할때 수질방지시설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업에 각각 1개씩 선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예 : 방지시설업에 수질기사, 개인하수처리시설업에 토목기사)
2. 수질관리기술사와 수질기사를 제외한 자격증은 수질방지시설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업에 한사람이 중복선임이 가능한지요(예 : 화공기사)
3. 수질방지시설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방지시설업에 등록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업의 등록은 필요가 없는지요)

A 방지시설업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는 것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은 「하수도법」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 및 시공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것으로 두 개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4〕 '방지시설업 등록 세부기준' 비고 3에 따라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질환경기사는 방지시설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중복선임이 불가하며 화공기사의 경우는 중복선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